

체육대학관운영및관리규정

제 1 조 (목적) 체육대학관의 운영규정은 체육교육의 효과적인 목적달성과 각종 시설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시설) 체육대학관 운영규정에 포함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.

1. 강의실
2. 교수연구실
3. 각종 실습장
 - 1) 체조장 2) 농구장
 - 3) 수영장 4) 체력훈련장
 - 5) 종합격기장(유도장, 권투장, 태권도장, 레슬링장)
 - 6) 실험실습실 7) 운동장
 - 8) 무용실기실(제1, 제2무용실, 작품실기실)
 - 9) 기타시설
4. 부대시설
 - 1) 기재실 2) 간의실 3) 선승관 4) 도서실
 - 5) 휴게실 6) 학도호국단실 7) 기타시설

제 3 조 (관리) ① 체육대학관의 모든 시설관리는 관장이 책임진다.

- ② 상기 시설관리를 위하여 관장은 각 실습장의 책임교수를 추천하고 학장이 이를 위촉한다.
- ③ 각 실습장의 책임교수는 모든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지며 실습장에서 필요한 비품 및 소모품 구입, 보수 등을 관장에게 신청·의뢰한다.
- ④ 관장은 모든 실습장에서 의뢰한 비품 및 소모품 구입, 보수 등의 내용을 학과장과 협의하여 조치한다.
- ⑤ 각 실습장의 조수 및 조교는 소정의 일지를 작성하여 책임교수와 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.
- ⑥ 체육대학관내의 모든 시설관리를 위하여 관장은 학기당 1회 이상 비품조사를 하여야 하며, 이를 학장에게 보고한다.

제 4 조 (운영) ① 체육대학관내의 모든 실습장은 정규수업시간과 운동선수 연습 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다. 단,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할 수 있다.

- ② 정규수업시간, 운동선수 연습시간 등 체육과학관 내의 모든 실습장 사용시간 조정을 학과장과 관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③ 정규수업시간 및 운동선수 연습시간 이외의 시설 및 비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.
- ④ 실습장에서 경기 및 공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장과 학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⑤ 간의실 사용은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한다.
- ⑥ 선승관 개방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.
- ⑦ 학교 운동부와 관계된 모든 자료(우승기, 트로피, 상장, 폐난트, 메달 등)는 개인이 보관할 수 없으며, 선승관에 보관하여야 한다.

부 칙

1. 각 실습장은 필요에 따라 별도 정하는 내규에 의거 운영할 수도 있다. 단, 별도내규에 의거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2. 본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통례에 의하며, 보직교수 회의를 거쳐 시행한다.

3. 본 규정은 1982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